


 통일부		<h1>보 도 자 료</h1>		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	총 2쪽(붙임 1쪽 포함)	
배포일시	2020. 9. 4.(금)	담당부서	통일교육원 사회통일교육과	
담당과장	조용식 (02-901-7050)	담 당 자	박형국 사무관 (02-901-7053)	

지역 사회 평화 · 통일의 공감대 확산

- 통일교육원,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-

- 지역 사회의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통일교육원(원장 백준기)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(원장 윤여각)은 2020년 9월 4일(금요일) 업무협약을 체결하고, 상호협력의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.
 -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기관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평화 · 통일 교육과정을 개설하고,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 - 통일교육원은 지역 평생교육 기관들의 평화 · 통일 교육과정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강사를 파견하고, 다양한 교육자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.
- 통일교육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역 주민의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역 통일교육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.
 - 지역 통일교육 네트워크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외에도 사립대학 평생교육원 협의체인 「한국 대학평생교육원 협의회」와 국공립대학 평생교육원 협의체인 「한국 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 협의회」도 참여할 계획입니다.
- * △통일교육원 - 한국 대학평생교육원 협의회 업무협약 체결(8.3)
 △통일교육원 - 한국 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 협의회 업무협약 체결(9.1)
- 통일교육원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지역 사회의 평화 · 통일교육 저변을 확대하고, 미래 세대를 위한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.

※ 붙임 업무협약서 1부. 끝.



통일교육원-국가평생교육진흥원 상호협력 협약서

“통일부 통일교육원”과 “국가평생교육진흥원”(이하 “양 기관”이라 한다)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·통일교육 활성화와 국가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해 나갈 것을 협약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통일부 통일교육원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각각의 설립목적은 공동목표로 추진하기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약내용) 양 기관은 아래 협력 사업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상호 존중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.

1.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전국 시·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시·군·구 평생학습도시와 연계하여 주민 대상 평화·통일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.
2. 통일교육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전국 시·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시·군·구 평생학습도시가 요청할 경우 강사 지원·교육 콘텐츠 제공 등 교육운영에 협력한다.
3. 양 기관은 통일공감대 조성을 위한 사회 통일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상호 협력한다.
4. 기타 양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제반 교육업무에 대해 협력한다.

제3조(비밀유지 의무) 양 기관은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.

제4조(협약기간) 이 협약은 체결한 날부터 1년간 유효하며, 별도의 의견이 제기 되지 않는 경우에는 1년씩 자동 연장된다. 단, 양 기관간 협의 하에 협약내용을 개정 또는 폐기할 수 있다.

제5조(기타) 동 사업에 필요한 추가사항은 양 기관의 실무자간 협의 하에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효력 발생일) 동 협약의 효력은 통일교육원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한다.

제2조(협약서의 보관) 동 협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0년 9월 4일

통일부 통일교육원

국가평생교육진흥원

원장 백준기

원장 윤여각